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19
----------	------

2024년 6월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인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녹색산업 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사업을 통합하여 탄소중립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 민간위탁 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
 -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기업발굴·창업 활성화,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평가 지원)
 -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투자유치·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판로개척·수출지원)
 - 기후테크 정보 분석·제공(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 기술·제품 등 대시민 홍보)

- 위탁기간: 3년('25.1.1.~'27.12.31.)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868백만원(민간위탁금, '25년 기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4.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녹색산업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종료 후 통합 신규 민간위탁 추진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

- 기후테크 기업 발굴, 인큐베이팅, 창업 활성화
- 기후테크 기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후테크 성과 창출 기반조성

- 기후테크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 기후테크 사업 지속을 위한 기업평가·인증 지원

기후테크 정보 분석 및 제공

-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현황 분석
- 국내외 기술·정책·산업 동향 및 전문정보 제공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신규(통·폐합) 추진 배경

- 서울시는 녹색산업 관련 교육, 투자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주요 사무로 하는 ‘녹색산업지원센터’와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구매 확대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별도 구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생산·판로개척 사업이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기업교육·컨설팅·온라인 기획전과 유사하고, 녹색제품 구매 확대 업무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등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온 바 있음.

<녹색구매지원센터 중복사무 지적 사항 정리>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녹색산업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권고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27418, '22.10.10.)
- 효율성 제고 위해 ‘녹색구매 지원센터’ 폐지, ‘녹색산업 지원센터’와 통합 추진 필요
- '23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시 김웅 의원 보도자료, 세계일보 보도('23.10.15.))
- 기후환경정책과 내 역할이 중복되는 센터들의 통폐합 필요
- 제321회 정례회 '24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¹⁾ 관련 기업 육성으로 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

1) 기후테크(C-tech)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 기술을 말하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후테크 유형을 클린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카본테크 등 산업 성격에 따라 총 5개로 분류하고 있음.

2)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①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기업발굴·창업 활성화,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평가 지원), ②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투자유치·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판로개척·수출지원), ③ 기후테크 정보 분석·제공(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 기술·제품 등 대시민 홍보) 등임.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4)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²⁾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³⁾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신규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예산편성 및 시의회 의결 → 비용심사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사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은 현재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신규)(기후환경정책과-5735, '24.4.16.)

3)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기후환경정책과)(조직담당관-4079, '24.4.16.)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현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기후테크 산업 지원	사무 형	신규 위탁 (통합) 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 국가녹색기술 연구소	3년 (25.1.1.~ 27.12.31.)	적정 (권고)	[권고] -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예산)를 적정 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

5)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 개선요청사항 요약

○ 조직 및 인력 운영: 전담 인력 이외에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내 자체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지원센터 전담 연구원과 수탁기관(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함.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권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매년 회계감사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2년 기준, 사업비의 40% 이상이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민간 위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의문인바, 이의 감소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 성과: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을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일부 목표의 달성률이 200%가 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도전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기반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녹색산업육성지원-(’24.04.,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6)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동의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역할중복 센터의 통폐합 요구’ 등에 따른 것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폐지와 녹색 산업지원센터의 개편에 대해 이견 없으며, 소관부서는 향후 비용심사,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일정>

- | | |
|--|-------------|
|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 24년 6월 |
|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 : 24년 7~8월 |
|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 24년 9~10월 |
|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기후환경정책과→공공감사담당관) | |
|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및 위수탁 협약체결 | : 24년 11월 |
-

붙임.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민간위탁 예산 산출 내역(2025년)

항목	내역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기본급		168,252	19.4%	4명
	제수당		30,812	3.5%	
	퇴직충당금		16,029	1.8%	
	보험료		20,654	2.4%	
소 계			235,747	27.1%	
운영비	여비		1,320	0.2%	
	사무기기 임차료, 운영수당		7,179	0.8%	
	소모품, 우편통신비		3,777	0.4%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610	0.9%	
	기타(업무추진비)		2,860	0.3%	
소 계			22,746	2.6%	
사업비	기후테크 산업역량 강화	스타트업 발굴 경연, 사업화지원	49,700	5.7%	
		전문교육 및 컨설팅	40,800	4.7%	
		시제품 제작 지원	76,000	8.8%	
		기업 평가 지원	21,000	2.4%	
	기후테크 성과창출 기반조성	투자, 수출상담회	87,000	10.0%	
		온, 오프라인 기획전	115,000	13.2%	
		오픈이노베이션	43,000	5.0%	
	기후테크 정보제공	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70,000	8.1%	
		뉴스레터, 자료집 제작	5,860	0.7%	
		홈페이지 구축, 홍보자료 제작	55,000	6.3%	
자본형성	사무공간 구성 비용	30,000	3.5%		
소 계			593,360	68.3%	
위탁수수료			15,000	1.7%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액의 2% 이내
부가가치세			1,500	0.2%	위탁수수료의 10%
총 계			868,353	100.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19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인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녹색산업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사업을 통폐합하여 탄소중립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 나.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마. 위탁사무 내용

-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기업발굴·창업 활성화,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평가 지원)
-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투자유치·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판로개척·수출지원)
- 기후테크 정보 분석·제공(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 기술·제품 등 대시민 홍보)

바. 위탁기간 : 3년 ('25. 1. 1. ~ '27.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아. 소요예산 : 868백만원(민간위탁금, '25년 기준)

자. 기대효과

- 기후테크 강소기업 육성 및 탄소중립 기술·제품개발 촉진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4.4.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녹색산업육성 지원’,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오동훈(☎2133-3586)